

「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」 계속비사업 승인 안 심사보고

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2.7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2. 2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2. 2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69호)
- 다. 2004. 12. 7 :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)

가. 제안사유

-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 ~ 2006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

나. 계속비사업 승인 안

○ 목 적

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(2002. 6.)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안이 필요하며,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생적·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한려수도의 청정해역 보존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
-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(계속비사업의 예산요구)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사천시 사등동 114-1번지(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)
- 사업기간 : 2004. ~ 2006.
- 시행주체 : 사천시
- 총사업비 : 14,421백만원
- 시행방법 : 장기계속공사
- 사업량 : 시설용량 Q = 43,000m³/일(고도 및 소독시설 1식)
차집관로 L = 5km

○ 추진현황

-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: 2003. 10.
-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: 2004. 3.
- 고도처리공법 결정 : 2004. 4.
- 공사 착공 : 2005. 4.
- 공사 준공 : 2006. 12.

○ 사업비 : 14,421백만원(국비 6,153. 도비 4,943. 시비 3,325)

-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4년이전	2004년	2005년	2006년	비고
계	14,421	-	2,812	1,596	10,013	
국비	6,153	-	-	846	5,307	
도비	4,943	-	1,986	375	2,582	
시비	3,325	-	826	375	2,124	

○ 사업별 투자내역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비 고
합 계	14,421	
공 사 비	13,089	토목·조경, 건축, 기계, 전기·계장공사
보 상 비	-	
설계 및 부대비	1,332	

○ 계속사업 이유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6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당해년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(3년)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
 - 당해년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
 -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년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(2002. 6.)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안이 필요하며,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생적·효율적 운영

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한려수도의 청정해역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.

- 사천시 사등동 114-1번지 상(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)에 144억 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도처리공법 결정을 거쳐 2005년 4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3,000m³규모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5km의 차집 관로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
 -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. 2월 25일 경상남도 지사의 투·융자사업 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지방비부담 등을 협의한 경우 투·융자심사 조건부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
 -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년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계속비 사업조서(붙임참조)